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김운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살펴 보면 북에서 반입할 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다. 따라서 남북한 농산물 교역은 단순한 교역 차원이 아닌 생산 분야의 협력을 병행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약생산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노동과 토양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만성적 부족 농산품에 대해 북한의 생산여건을 감안,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가격유연의 제정으로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에 있어 남한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남한 가격을 적용하고 남한 농림수산물의 북한 반출시 북한의 거래기준을 적용하며 자액은 통일경협기금 등에서 보충한다. 셋째, 남북한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제공해야 한다. 넷째,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직거래, 간접거래, 경화결제, 구상무역, 계약재배, 주문생산 등 여러 방식을 신중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농업용 자재산업을 위한 투자촉진이 필요하다.

I. 서론

동서냉전체제의 종식과 최근의 북미 핵협상 타결로 남북한간에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대북경제활성화선언'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남북한간에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을 내세워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낙후된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개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탈이

념화와 동서화합시대에 대한 효율적 대응, 선진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통한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북한의 내부변화에 비추어 남북한간에도 종전의 소극적인 경제교류협력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성있는 상품의 개발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의 구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북미간의 경수로 문제가 원만히 성사되면 남북한간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남북한 교역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농업부문의 협력방안을 모색,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남북한간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1. 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북한의 농림수산물 총교역은 1992년의 경우 국가 전체교역의 18%인 3억 4,944만 달러로 이중 수출이 1억 4,108만 달러(40.4%), 수입은 2억 836만 달러(59.6%)로 6,727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북한과 매년 지속적으로 농림수산물을 교역하고 있는 중국, 일본, 구소련, 홍콩 등 4개 주요 교역국이 북한의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 대북한 수출은 1993년의 감소현상을 제외하고는 1992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다. 수출품목은 1985~199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수산생물 74.6%, 육과 식용설육 39.3%, 곡물분, 전분, 밀크 조제품 31.6%이다. 과일, 가공채소, 산수목과 식물의 인경과 뿌리 등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품목은 1993년의 경우 수산생물이 총수입의 56.8%,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이 25.3%, 착유용 종자와 과실이 11.9%이다. 이들 3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한다.

중국은 매년 100여가지나 되는 많은 종류의 농림수산물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대의 농림수산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대북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1억 6,216만 달러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곡물을 포함한 식물성

생산물이다. 다음이 종자와 과일, 의약용식물 등이다. 특히 야채 및 과실은 1984~1991년 동안 연평균 120.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도 1993년의 경우 북한의 총 곡물수입액 1억 1,419만 달러의 85.5%인 9,768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에 비해 43%나 증가되었으며, 이 가운데 옥수수가 96.3%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의 경우 극심한 냉해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한 수입은 곡물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불과하며 농림수산물 수입은 1993년의 경우 1,331만 달러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어개류 및 그 조제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야채 및 과일 등이다.

CIS(독립국가연합)는 북한에 소맥과 면화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소맥의 경우 1988년에는 4,172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소련의 대북한 수입품목은 백미, 신선 과일(대부분 사과), 신선 토마토, 신선 양배추와 가공한

전분, 엽연초 등이다. 소련이 수입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소맥과 버터제 교역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남북한간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남북한간의 교역은 1988년 7월 '7·7특별선언'에서 대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8년 대북 경제개방 조치 이후 1994년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입·승인된 금액을 보면 802,356천 달러이며 이 중 농림수산물은 95,759천 달러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50,544천 달러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반입 승인된 금액 중 반입 통관된 금액은 653,982천 달러로 81.5%가 반입되었다. 농산물 반입액은 42,524천 달러로 반입승인액의 44%, 수산물은 12,349천 달러로 24.4%의 통관실적을

<표 1> 연도별 대북한 반입통관 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연 도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섬유류	화학제품	기 타 ¹⁾	계
1989년	414	174	1,094	15,073	1,311		589	18,655
1990년	4,931	392	1,599	4,529	204		623	12,278
1991년	5,054	3,052	6,173	86,044	1,599	1,672	2,139	105,723
1992년	10,390	5,130	14,437	125,418	3,516	1,248	2,724	162,863
1993년	9,674	878	1,371	154,263	8,945	663	2,372	178,166
1994년	12,061	2,723	1,448	136,340	18,500	954	4,272	176,298
계	42,524 (6.5)	12,349 (1.9)	26,122 (4.0)	521,657 (79.8)	34,075 (5.2)	4,537 (0.7)	12,719 (1.9)	653,983 (100)

주: 1) 1993년 기타에 전자제품 80천 달러 포함

연구논단

<표 2> 연도별 대북한 주요 농림수산물 반입통관 실적 현황

단위: MT/천 불

	1989~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3월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M/T	천 불	M/T	천 불	M/T	천 불	M/T	천 불	M/T	천 불
<농산물>	23,706	15,011	1,506	3,318	2,469	3,976	2,246	1,997	29,927	24,302
한 약 재	2,592	8,220	744	2,009	1,085	2,145	837	846	5,258	13,238
감 자	20,682	6,291							20,682	6,291
로알제리			4	275	14	1,104	1.5	196	20	1,575
낙 화 생	150	203			528	452			678	655
들 개			41	32	119	114	476	499	636	645
박하기름	33	118	69	346					102	464
사 과							844	373	844	373
피 울 무			205	229					205	229
고구마줄기	58	54	85	76	41	38	51	50	235	218
기 타	191	125	358	351	682	123	36.5	33	1,267	614
<임산물>	3,821	5,369	4,583	6,356	3,834	8,085	1,781	3,603	14,019	23,413
호 두	1,305	2,205	2,145	3,627	3,110	6,349	1,487	3,105	8,047	15,286
고사리류	419	1,057	424	1,653	244	843	90	294	1,177	3,847
버 섯 류	131	846	39	185	51	605	2.6	83	224	1,719
건도토리	1,256	505	1,510	602	310	149	101	32	3,177	1,288
원 목	6,684	532	1,012	112					7,696	644
	(CBM)		(CBM)						(CBM)	
기 타	710	224	465	177	119	139	100.4	89	1,394	629
<수산물>	14,680	8,704	1,090	878	3,140	2,723	111	217	19,021	12,522
냉동명태	11,763	4,552	627	231	2,015	615			14,405	5,398
냉장명태	1,267	1,393	132	130					1,399	1,523
냉동홍어	523	1,268							523	1,268
북 어	36	90			568	690	5	31	609	811
(건명태)										
냉장조기					150	805			150	805
냉동꽃게					144	374	21	25	165	399
냉동갈치	160	375							160	375
생 백 합			220	278	114	36	29	51	363	365
기 타	931	1026	111	239	149	203	56	110	1247	1578

주: 임산물의 기타 합계에서 원목은 단위가 달라 물량산정에서 제외되었음.

보여 주고 있다. 1990~94년에 반입된 농산물 중 대표적인 품목이 감자, 한약재, 호두, 땅콩, 버섯류, 견고추, 앞남배, 견고사리 등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반입되었다. 수산물은 반입 승인된 품목의 경우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건오징어, 냉동조기, 냉동굴뱅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이 반입되었다.

이와 같이 반입통관 품목의 양이 미미한 것은 북한의 모든 농산물 생산이 계획생산체제로 되어 있는데다 계획생산 우선 순위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 데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자급 위주로 생산을 독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반출될 만한 여유있는 품목과 부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전계획이 없는 우발적인 무역거래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1989~94년까지의 반출승인 금액은 79,479천 달러이었으며 반출통관된 금액은

44,039천 달러로 55.4%가 통관되었다. 이 중 농수산물은 반출통관액이 2,802천 달러로 전체 반출 통관액의 6.4%를 점하고 있다. 반출통관된 금액은 44,039천 달러로 반출승인 금액의 55.4%로서 반입통관 비율 82%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농림수산물은 1,834천 달러가 반출 통관되어 반출승인 금액 2,701천 달러의 67.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출승인된 품목은 쌀 5,000톤, 마늘 500톤, 양파 500톤, 마른감 1,450속, 콩기름 200톤,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 200톤 등이었으나 쌀 5,000톤과 마늘 1,000톤, 콩기름 62톤, 감귤 10톤, 마른감 1,126속이 반출되었으며 1989년 이후 1995년 3월까지의 총금액으로는 1,849천 달러이다.

그러나 쌀 5,000톤에 대한 대응품이 아직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반았다는 의사표시조차 없는 상황이다. 마늘도 1992년도에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수매물량 중 5,000톤을 북한산 메밀

<표 3> 연도별 반출통관 농수산물 현황

	1989~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3월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M/T	천 불	속	천 불	M/T	천 불	M/T	천 불	M/T	천 불
농림수산물	6,000	1,671	1,126	6	160	151	16	21	-	1,849
<농산물>	6,000	1,671			60	54	16	21	6,076	1,746
쌀	5,000	1,607							5,000	1,607
마늘	1,000	64							1,000	64
콩기름					50	36	12	15	62	51
감귤					10	18			10	18
들깨							4	6	4	6
<수산물>			1,126	6	100	97	-	-	-	103
마른감			1,126	6					1,126속	6
냉동오징어					100	97			100	97

과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1차로 1,000톤을 반출한 후 바로 대응품 반입이 되지 않아 잔여 물량은 보내지 않았다. 대응품은 콩나물콩으로 1994년 2월 28일까지 반입키로 계약을 변경조치 하였으나 1995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

Ⅲ.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물 교역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교역이 1988년 7·7선언과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가 확대·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협력 추진의 부진과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의 미흡, 그리고 민간기업간 전시적 과당경쟁의 노출 등이다. 농산물의 교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남북한 상호교류의 면면을 보면 전체 농림수산물의 교역에서 반입될 만한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가중되고 있는 식량난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식량 생산위주의 계획생산으로 인하여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품목이 콩, 팥, 녹두, 메밀 등 잡곡류로 이들 생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수출할 만한 여유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역에 앞서 북한의 농업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종 농업관련 정보가 사전에 입수되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교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농산물 교역형태는 1992년의 경우 남북교역 규모(승인 기준)가 2억 달러가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교역을 공식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간접교역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창기의 남북교역은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형태였으나 점차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사를 통한 간접교역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간접교역은 결국 자국의 이익보다는 홍콩,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상에만 이익을 전가시키는 결과만 초래된다.

한편 수입업체들이 자유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무세(無稅)로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을 초래,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더구나 북한산과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반입업체에 독점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가 크게 문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국내 수입업체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중국산 또는 제3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관세가 높을수록 위장반입의 가능성이 커지며 북한산의 경우 식물검역규제가 없어 병충해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동식물 방

역문제도 동시에 발생될 것이다.

북한은 농산물 교역의 결제방식도 경화결제 보다는 과거부터 구상무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남북교역의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들면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반출된 쌀과 마늘의 대응품이 북한으로부터 일부만 반입되었다. 따라서 계약된 잔여물량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V. 남북한간 농림수산물 교역 전망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기본목표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민족의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협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추구라는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정책 방향은 물자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북관계가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단계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주권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특히 농산물교역은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일반국민의 기초식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품목의 경우 남북한 관계개선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며 쌍방의 수

용이 용이한 교역대상이다.

더구나 남북한의 소비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공산품 교역의 추진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나 남북한간에 기후 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이질성이 없는 농산물 교역은 그 실현과 확대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남북한간 농산물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상업적 교역이라기 보다는 북한측의 명분과 실리를 보다 살려주는 방향에서 다소는 모험과 양보가 따르는, 다소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는 입장에서 추진함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농산물 교역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북한에서 반입할 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현재 반입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고사리, 도토리, 한약재 등 임산물들로 대부분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된 품목들이며 실제로 논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많지 않다. 1991~1994년 동안 북한의 주요교역국인 구소련 연방, 중국, 홍콩, 일본 등에 곡류나 잡곡류의 수출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1989~1994년 동안 반입승인된 품목은 고추, 팥, 감자, 땅콩, 메밀 등 다양하나 실제로 반입 통관되고 있는 품목은 감자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철저한 계획생산과 계획수출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생산계획을 세울 때 그 우선순위를 식량생산에 먼

저 배분하고, 다음에 채소생산에, 마지막으로 의화획득을 목적으로 과수, 특용작물, 양잠 등에 배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식량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다보니 한국측이 요구하는 품목, 즉, 쌀, 녹두, 메밀, 콩 등 잡곡류 생산은 극히 제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처럼 쌀을 수출하고 대신 양이 많은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처럼 남한에서 매년 수입되고 있는 특용작물을 재배, 남한으로 반출하고 남한의 쌀, 보리 등을 북으로 반입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측이 만성적 생산부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 중 북한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사전에 우선적으로 계획생산에 반영될 때 상호 보완적 교역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밖에 남북한 농산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보다 한단계 높은 생산분야의 협력을 병행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추진이 앞으로의 통일 전단계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비농업분야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성사되어 실시되고 있는 임가공 형태의 경제협력 방식과 유사한 교역방식이다.

'계약생산' 방식은 현재 북한이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합의 단계에서 핵문제도 연기되었으나 작년부턴 북미간의 핵협상 타결로 현재 남북간에 합의 단계에 와 있다. 이 방

식은 남한에 비해 발전적이 두배나 많은 북한의 밭작물에 한해서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만성적 부족 농산물에 대해 북한의 생산여건을 감안,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계약생산은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북한 계약생산에 의한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시는 다음 단계로서 북한에서 계약생산된 물량을 일시 반입이 아닌 현지 보관을 위해 생산단지 또는 항구 인근에 저장시설을 위한 합작건설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계약재배로 일시에 대량 생산, 출하됨으로서 부패, 변질성이 많은 품목의 경우, 예를 들면 감자같은 품목의 경우 현지에 전분공장을 합작 건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희망한 건강식품 및 과일주스 가공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증진과 경제교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교역조건은 현재의 간접교역 방식에서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결제방식도 가능한 경화결제방식이 바람직하나 북한의 현 경제사정으로 보아 구상무역도 가능하다. 농산물 교역대상 품목의 가격결정은 국제가격 수준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세되는 관세 상당액 범위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도 북한의 경제사정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농가

수취가격 이내의 수준까지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계약생산 시 농산물가격을 남한의 농가수매가격으로 설정할 시에는 국제가격과 국내농가 수취가격의 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북한농가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남북한 교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반출입 제한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관당국과 공조체제를 확인, 위장반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 확인과 동식물 검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직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관련 자료를 적극 공개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대북한 교역가능품목 발굴 및 대북 거래선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남북한간 농업부문 협력사업 현황과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물적교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농산물교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항상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산물은 거의 반입이 어렵다고 보아진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생산 체

제인데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식량생산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우리측이 요구하는 잡곡 위주의 필요 농산물은 거의 반입이 어려운 반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임산물, 한약재 등이 교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 교역 패턴은 현 북한의 경직된 체제하에서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은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생산분야의 협력을 통한 교역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생산분야의 협력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의 협력체제로서 이러한 방식의 채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증산이 한계에 와 있는 북한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북한의 농지자원은 국민 1인당 경지면적 소유와 비교하여 보면 남한보다는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원에 남한수준의 기술전파와 농자재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경영방법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산분야의 협력은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산분야의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호 유리한 농산물

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남북한의 부족 농산물을 보완케 함으로 교류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쌍방간에 과부족 농산물에 관한 정보교환과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농자재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상호 협력과 이익 도모를 위한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산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다수확 종자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교환 내지는 상호지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영농기술의 교환 및 조사연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남북 쌍방간의 이익추구는 물론 이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의 농업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 분야의 협력체계가 어느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에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생산된 농산물의 보관을 위한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 인접한 지역의 농산물은 제때에 공급이 가능하나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산간지대의 농산물은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하므로 현지 생산지역에 저장창고를 합작 건설하는 방안과 농수산물의 가공시설 등도 함께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가공시설의 합작건설은 교역상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쌍방간에 상호 방문을 통한 자료조사를 위한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고 교역확대 및 합작추진의 원활화를 위해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협력도 단순히 남한의 생산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협력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보다는 북한의 기존 농자재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북한의 농자재 산업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원유부족, 수리에 필요한 부품공급 부족 등으로 거의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료공장의 경우 1950~1960년대 설비시설로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노후시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자재 산업은 군산(軍·産)합작형 중공업 우선 정책에 밀려 기초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농약의 경우는 제초제, 살균제 및 살충제 등 20여종을 연간 8천 톤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농약 수입량을 보면 이러한 시설은 거의 신빙성이 없고 최근의 연속적인 병충해 피해에 따른 작물생산량 감수 등을 감안할 때 농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농산물 교역이 크게 증가되어 어느 정도 신뢰와 거래관행이 정착된 단계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합작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 합작사업

으로는 농약, 비료, 농기계공장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부문의 협력방안으로는 생산분야외에 현재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다가 경제사정의 악화로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서해안 간척지의 남북한 공동개발에 대한 협력 등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서해안 개발 가능면적은 약 30만ha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재 5~6만ha의 완성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대규모 간척지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남한과는 달리 밭에서 옥수수 재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옥수수 사료곡물을 도입하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수입선을 북한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공장을 남북한이 합작투자하여 공동운영하는 것도 협력의 한 방법이다.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식량자원과 결합되는 사료자원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것 또한 생산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단위당 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농업부문 협력으로는 남북한 교역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최근 타결된 경수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전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인적, 기술교류의 협력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의 협력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기술교류를 위한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다. 경수로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이 가장 꺼리고 있는 남한 기술자의 북한 방문문제도 이러한 지원문제로서 비농업분야 보다는 농업분야의 기술협력은 비교적 그들이 쉽게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기술협력 중에서도 농작물 병해충의 남북한 공동방제 추진이라든가 주요 농산물의 품종교환, 자원의 공동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 농업기술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면 향후 남북한은 통일을 위한 간접적 효과는 물론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VI. 결론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냉전상태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 북미간의 핵협상 타결,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와 경수로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는 한중수교와 함께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동무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에는 상호 보완성 있는 상품의 교류는 물론 상호 경쟁·협력하는 경쟁적 공존관계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사회의 각분야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물자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상호 주권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교역은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일반국민의 기초식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역대상이다. 더구나 남북한 소비생활수준 차이로 공산품 교역에는 제약이 따르나 기후풍토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한 이질성이 없는 농산물 교역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북에서 반입할 만한 농산품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생산 체제인데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식량생산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우리측이 요구하는 품목의 생산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농산물 교역은 단순한 교역차원이 아닌 생산분야의 협력을 병행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약생산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만성적 부족 농산품에 대해 북한의 생산여건을

감안, 연간 농산물 생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품목과 물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계약생산은 지역적 근접성에서 오는 수송비 및 부대비용 절감과 국민기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계약생산된 물량의 현지보관을 위해 생산단지 또는 인근항구에 저장시설을 갖추고 부패, 변질성이 많은 품목의 경우 가공공장의 합작건설의 단계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생산분야의 협력에서는 계약생산 외에 북한의 농지자원 이용을 남한의 생산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교환, 우량품종 교환, 농자재공급을 통하여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 농림수산물은 수산물(가공품), 송이버섯, 채소(조제품), 한약재, 생사, 견과류, 과실류, 연초, 감자 등으로 남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주요 수입 농림수산물은 산동물, 채소·과실 조제품, 음료 및 알콜, 육류(및 조제품), 옥수수, 대두, 담배, 소맥, 면화 원목 등이다. 따라서 종자용 산동물, 가공식품, 음료·알콜, 담배, 밀가루 등 남한의 공급 능력과 검역 등에 큰 문제가 없는 품목들이 많다.

이러한 농림수산물 거래 잠재력에 대응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상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밭과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밭작물(특히 고냉지작물)과 과실류 생산에 있어 수도작보다 유리하고(남한은 상대적으로 수도작 유리), 남한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용작물(팥, 녹두, 참깨, 고추 등) 생산이 밀, 보리 등 주곡생산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물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재배와 주문생산에 의한 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특화작물은 대부분 남한지역에서 공급감소와 수요증가로 초과수요가 증가하는 작물들로, 주문생산 또는 계약재배에 의해 북한지역 생산면적을 증가시켜 작부체계의 조정을 유도하고 남한의 품종, 기술, 인적교류 효과를 동시에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한은 북한의 수입농산물인 종자용 산동물, 가공식품, 밀가루, 담배 등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미곡, 보리 등 주곡의 생산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격유인 제공으로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에 있어 남한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을 경우 남한 가격을 적용하고 남한 농림수산물의 북한 반출시 북한의 거래기준을 적용하며 차액은 통일경협기금 등에서 보전한다.

셋째, 남북한 거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제공이다.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수 있는 농림수산물로 수산물, 채소, 과실 등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품목들은 물론 기타 품목들은 농림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보관시설 및 운송수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유통체계 및 하부구조가 완비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장시설, 운송수단 등에 대한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 남한의 경우 교류활성화에 대비 남북 연결 운송망 확충, 휴전선 인접지역에 물류센터를 구상할 수 있다.

넷째, 거래방식의 다양화이다. 직거래, 간접거래, 경화결제, 구상무역(공산품 포함), 계약재배, 주문생산 등 거래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농업용 자재산업에 위한 투자촉진이다. 노후 시설보수, 시설확충 등 북한의 투자수요에 대비하여 남한의 자재산업부문 진출을 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증이 필요하다. 국제 콘소시엄 구성 등에 대한 정부의 중재활동과 제도마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농기계, 비료산업은 1950~1960년대에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어 남한의 기술지원이나 시설대체 내지는 복구를 위한 지원도 북한의 농업침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다. 統